

학교법인 레마학원

2020학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이사정수	8인	재적이사	8인
감사정수	2인	재적감사	2인

1. 개최 일시 : 2020.08.13.(목) 19:00~20:00 (회의소집 통보일 : 2020.08.03.)

2. 개최 장소 : 화상회의(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비대면 회의 : 증빙자료 별첨)

3. 임원 출석 현황

○ 참석 임원

- 이사(7인) : 윤원영(이사장), 이명범, 노만균, 송 민, 이미순, 임성빈, 조장환
- 감사(2인) : 권성연, 조영임

○ 불참 임원

- 이사(1인) : 박종환

※ 배석 : 법인사무국장 정영준

4. 안 건

- (1) 제1호 : 학교법인 레마학원 정관 변경(안) 심의
- (2) 제2호 : 2020회계연도 법인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3) 제3호 :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4) 제4호 : 예명대학원대학교 2020.09.01.자 교원 재임용(안) 심의
- (5) 제5호 : 예명대학원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심의
- (6) 제6호 : 예명대학원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심의
- (7) 제7호 : 2020학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간(間)서명 건

간서명	송 민 	이미순 	조장환 
-----	---	---	---

5. 회의 내용

□ 개회 선언, 기도, 신입이사 환영 및 전차 회의록 접수

- 이사장(의장) : 이사정수 8인 중 7인 참석으로 성원이 되어 2020학년도 제2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고 기도를 한 후, 제1차 이사회 때 선임되고 6월 26일자로 교육부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되어 처음 이사회에 참석한 임성빈 신입이사를 박수로 환영하다.

법인사무국장의 2020학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 보고에 대하여는 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접수하다. 안건 심의는 제1호 안건부터 제7호 안건까지 순서대로 진행하겠다고 알리다.

□ 안건 심의

(제1호 안건) 학교법인 레마학원 정관 변경(안) 심의

- 이사장(의장) : “학교법인 레마학원 정관 변경(안)” 심의 건을 상정하며, 본 안건에 대해 정영준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지시하다.


- 정영준 사무국장 : 법인 정관 변경(안)에 대하여,

(1) 변경 사유

- 2020학년도 제1차 이사회(2020.05.14.)에서 심의·의결된 정관 변경 내용에 대하여 교육부의 정관 변경 보고 회신(사립대학정책과-6799 ; 2020.06.25.)에 따라 시정 요구된 조문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교원의 징계 시 관할청 사전통보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 내용

- 사립학교법의 조문 내용에 맞게 직위해제관련 조문에서 면직의 사유가 되는 내용을 삭제함(제42조 제8항) * 시정 요구
- 교원의 징계관련 관할청 사전 통보는 관할청으로부터 징계 요구된 사항만으로 한정함을 명확히 함(제61조의2)
- 부설연구기관의 설치와 관련하여 기타 기관 등의 종류와 명칭을 명확하게 명시함(제75조의2) * 시정 요구
- 사립학교법 개정 내용에 맞게 전체 조문 중 교직원의 ‘임면’ 또는 ‘임명’을 ‘임용’으로 용어를 변경함(제27조, 제36조, 제38조, 제42조, 제46조, 제47조, 제54의2, 제59조, 제61조, 제67조 등) * 시정 요구

간서명	송민 	이미순 	조장환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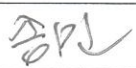


(3) 신규 조문 대비표(별첨 자료)

~ 등의 법인 정관 변경안을 회의 자료로 설명하다.

- 이사장(의장) : 본 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송 민 이사 : 지난 번 1차 이사회 때 심의한 정관 변경안에 대하여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 시정요구한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번 법인 정관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제안하다.
- 노만균 이사 : 송 민 이사의 제안에 동의하다.
- 이미순 이사, 이명범 이사 : 노만균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이사장(의장) :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에 따라 승인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고 참석 이사 전원이 찬성하므로, “학교법인 레마학원 정관 변경(안)” 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2호 안건) 2020회계연도 법인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이사장(의장) : “2020회계연도 법인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을 상정하며, 본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지시하다.
- 사무국장 : 2020회계연도 법인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 (1) 예산총칙
 - 법인회계 수입, 지출 총 예산 : 960,347천원
 - (2) 법인일반업무회계(세입, 세출)
 - 본예산 : 389,319천원
 - 1차 추경예산(안) : 376,950천원 (본예산 대비 12,369천원 감소)
 - (3) 법인수익사업회계(세입, 세출)
 - 본예산 : 618,711천원
 - 1차 추경예산(안) : 583,397천원 (본예산 대비 35,314천원 감소)
 ~ 등과 각각 세부 항목별 증감 사유를 회의 자료로 상세히 설명하다.
- 이사장(의장) : 본 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조장환 이사 : 긴축 재정 운영으로 법인 수익사업회계에서 관리운영비를 감액하고 고정부채상환을 증액하였고, 일반업무회계에서도 관리운영비를 감액하고 교육의 비용(대출이자)을 증액하는 등 계정과목별 예산액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제안하다.
- 이미순 이사 : 조장환 이사의 제안에 동의하다.
- 송 민 이사 : 이미순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이사장(의장) :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에 따라 승인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고 참석 이사 전원이 찬성하므로, “2020회계연도 법인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간서명	송 민 	이미순 	조장환 
-----	---	--	---

(제3호 안건)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이사장(의장) :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을 상정하며, 본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지시하다.
- 사무국장 :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 (1) 예산총칙
 - 교비회계 수입, 지출 총 예산 : 2,123,560천원
 - (2) 세입 예산(안)
 - 본예산 : 2,113,737천원
 - 1차 추경예산(안) : 2,123,560천원 (본예산 대비 9,823천원 증가)
 - (3) 세출 예산(안)
 - 본예산 : 2,113,737천원
 - 1차 추경예산(안) : 2,123,560천원 (본예산 대비 9,823천원 증가)
- ~ 등과 각각 세부 항목별 증감 사유를 회의 자료로 상세히 설명하며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원회 자문과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부연 설명하다.
- 이사장(의장) : 본 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이미순 이사 :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과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이미 받았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제안하다.
- 이명범 이사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유학생 등록이 저조하여 등록금수입이 감소되고 콜로키움 행사 비용 등 지정기부금이 증가된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과목별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이미순 이사의 제안에 동의하다.
- 송민 이사 : 이명범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이사장(의장) :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에 따라 승인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고 참석 이사 전원이 찬성하므로,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4호 안건) 예명대학원대학교 2020.09.01.자 교원 재임용(안) 심의

- 이사장(의장) : “예명대학원대학교 2020.09.01.자 교원 재임용(안)” 심의 건을 상정하며, 본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지시하다.
- 사무국장 : 예명대학원대학교 2020.09.01.자 교원 재임용(안)에 대하여,
 - (1) 제안 사유
 - 정관 제36조 제2항에 따라 예명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제청한 아래 교원의 재임용(안)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재임용 여부를 확정하고자 함

간서명	송민 	이미순 	조장환 
-----	--	---	---

(2) 교원 재임용 제청 내용 : 1명

○ 대상자 : 사회복지학전공 임해영(1970.06.29.)

○ 임용직급 : 조교수(일반 비정년)

○ 임용기간 : 2020.09.01. ~ 2022.08.31.(2년)

※ 최초 임용기간 : 2018.09.01. ~ 2020.08.31.(2년)

~ 등의 예명대학원대학교 2020.09.01.자 교원 재임용(안)에 대하여 회의 자료로 설명하며, 이에 대해서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보고하다.

○ 이사장(의장) : 본 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노만균 이사 :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의 평가와 연구 실적물 등을 확인한 결과 교원 재임용 대상자로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였고, 심의 자료를 살펴봐도 특별한 흠결이 없다고 생각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제안하다.

○ 이미순 이사 : 노만균 이사의 제안에 동의하다.

○ 임성빈 이사 : 이미순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이사장(의장) :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에 따라 승인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고 참석 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예명대학원대학교 2020.09.01.자 교원 재임용(안)” 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5호 안건) 예명대학원대학교 직제 규정 개정(안) 심의

○ 이사장(의장) : “예명대학원대학교 직제 규정 개정(안)” 심의 건을 상정하며, 본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지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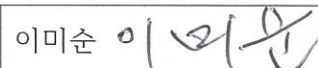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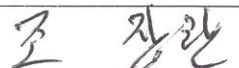
○ 사무국장 : 직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1) 개정 이유

○ 현재 시행 중인 팀제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직 임용 절차를 정관 규정에 맞게 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일부 대외직명을 지정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 교학처에 교학팀과 국제교류팀을 두고 사무처에 총무팀을 둠(제3조 제2항 신설)
- 일반직원의 직급 용어를 정관 및 직원 인사 규정과 동일하게 함(제13조 제1항 제2호)
- 정관 규정에 맞게 대학의 보직(팀장, 부설연구기관의 장 포함)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하도록 하고, 팀장 보직의 직급을 명시하며, 과장 이하 보직은 삭제함(제14조)
- 업무상 필요한 경우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교류팀장의 대외직명은 국제교류원장으로 하며, 직급에 따라 과장, 계장 및 주임의 대외직명을 지정함(제15조 신설)

간서명	송민 	이미순 	조장환 
-----	--	---	---

~ 등의 직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회의 자료에 따라 신규 조문 대비표 내용으로 자세히 설명하며, 이에 대해서는 대학원위원회와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고 보고하다.

- 이사장(의장) : 본 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송 민 이사 : 현재 팀장을 두고 있고 대학의 보직 임용 절차를 정관 조항에 맞게 수정하며, 또한 학생 모집활동 등 대외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별도 직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제안하다.
- 이미순 이사 : 송 민 이사의 제안에 동의하다.
- 노만균 이사 : 이미순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이사장(의장) :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에 따라 승인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고 참석 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예명대학원대학교 직제 규정 개정(안)” 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6호 안건) 예명대학원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심의

- 이사장(의장) : “예명대학원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심의 건을 상정하며, 본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지시하다.
- 사무국장 : 예명대학원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 (1) 개정 이유
 -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을 매년 초 총장이 따로 정하고 이 기준에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과 금액 등을 명시하도록 하며, 폐지된 수당을 삭제하고 교원 연구수당 지급 근거와 정관에 명시된 보수의 일부 감액 기준 및 용어의 정의 관련 조를 신설하기 위함
 - (2) 주요 골자
 - 교직원 보수 규정이 정관에 근거함을 명시함(제1조)
 - 보수, 봉급, 수당 및 보수의 일할계산 등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제2조의2)
 - 보수지급일을 실제와 맞게 변경하며, 교직원의 보수지급기준을 매년 총장이 정하도록 함(제4조)
 - 교원 초과강의수당,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직책수당은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함(제5조, 제6조)
 -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하고, 실제 운영되지 않는 당직수당은 폐지함(제7조, 제8조)
 - 전임교원에게 교원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제8조의2)
 - 직위해제기간의 보수 지급은 정관에 따름을 신설함(제12조)
 - 초과강의수당 등 ‘별표’를 모두 삭제함(별표 1, 2, 3, 4)

간서명	송 민 송민	이미순 이미순	조장환 조장환
-----	--------	---------	---------

~ 등의 예명대학원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회의 자료에 따라
 신규 조문 대비표 내용으로 자세히 설명하며, 이에 대해서는 대학원위원회와 규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고 보고하다.

- 이사장(의장) : 본 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송 민 이사 : 보수 규정에는 큰 원칙만 정하고 봉급과 각종 수당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 규정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총장이 별도의 기준으로 상세하게 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제안하다.
- 임성빈 이사 : 송 민 이사의 제안에 동의를 하나, 적용 일자와 관련하여서는 이 개정
 규정에 따라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보수 지급액은 현행 규
 정에 따른다는 것을 부칙 시행일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하다.
- 이미순 이사 : 임성빈 이사의 제안과 동의에 재청하다.
- 이사장(의장) :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에 따라 승인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고, 임성빈
 이사의 제안에 따른 시행일을 부칙에 명시하는 것에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였으
 므로, “예명대학원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은 원안에 시행일을 부칙에
 추가로 명시하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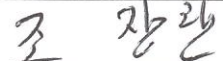
(제7호 안건) 2020학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간(間)서명 건

- 이사장(의장) : “2020학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간(間)서명” 건을 상정하며, 오늘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은 송 민 이사, 이미순 이사와 조장환 이사를 지정하고 본
 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다.
- 송 민 이사, 이미순 이사, 조장환 이사 : 간서명에 동의하다.
- 이사장(의장) : 간서명할 이사 3인과 다른 참석이사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송 민 이사, 이미순 이사, 조장환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간서명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다.

6. 폐회 선언

- 이사장(의장) : 더 이상 다른 안건이 없음을 확인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한 후
 2020학년도 제2차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붙임 : 정관 변경 내용(신규 조문 대비표) 1부

간서명	송 민 	이미순 	조장환 
-----	---	---	---

2020. 08. 13.

학교법인 레마학원 이사장 윤원영 윤원영

이 사 이명범 이명범

이 사 노만균 노만균

이 사 송민 송민

이 사 이미순 이미순

이 사 임성빈 임성빈

이 사 조장환 조장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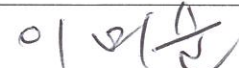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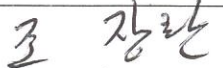
감 사 권성연 권성연

감 사 조영임 조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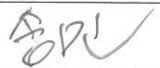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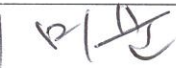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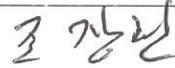
[붙임]

□ 학교법인 레마학원 정관 신규 조문 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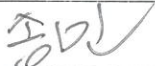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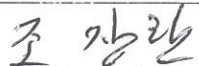
현행	변경안	비고
<p>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p> <p>① (생략)</p> <p>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 결정</u>한다.</p> <p>1. ~ 4. (생략)</p> <p>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u>임면</u>에 관한 사항</p> <p>6. ~ 8. (생략)</p>	<p>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p> <p>① (현행과 같음)</p> <p>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의결</u>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u>임용</u>에 관한 사항</p> <p>6. ~ 8. (현행과 같음)</p>	<p>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등 <교육부 사정요구 ; 사립대학정책과 -6799(2020.6.25)> * 이하 같음</p>
<p>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u>임면</u></p> <p>제36조(임면)</p> <p>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u>임면</u>하고, ... (중략)...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②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 중 ... (중략)... 이사장이 <u>임면</u>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u>임명</u>한다.</p> <p>1. ~ 6. (생략)</p> <p>③ (생략)</p> <p>④부총장 등의 보직은 ... (중략)... 이사장이 <u>임면</u>한다.</p> <p>⑤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임면</u>권자가 교원을 <u>임면</u>하였을 때에는 <u>임면</u>한 날로부터 ... (중략)... 한다.</p>	<p>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u>임용</u></p> <p>제36조(임용)</p> <p>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u>임용</u>하고, ... (중략)...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②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 중 ... (중략)... 이사장이 <u>임용</u>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u>임용</u>한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부총장 등의 보직은 ... (중략)... 이사장이 <u>임용</u>한다.</p> <p>⑤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임용</u>권자가 교원을 <u>임용</u>하였을 때에는 <u>임용</u>한 날로부터 ... (중략)... 한다.</p>	<p>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임면, 임명 → 임용) <교육부 사정요구></p>
<p>제38조(휴직의 사유)</p> <p>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u>임면</u>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 (중략)...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p> <p>1. ~ 12. (생략)</p>	<p>제38조(휴직의 사유)</p> <p>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u>임용</u>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 (중략)...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p> <p>1. ~ 12. (현행과 같음)</p>	<p>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교육부 사정요구></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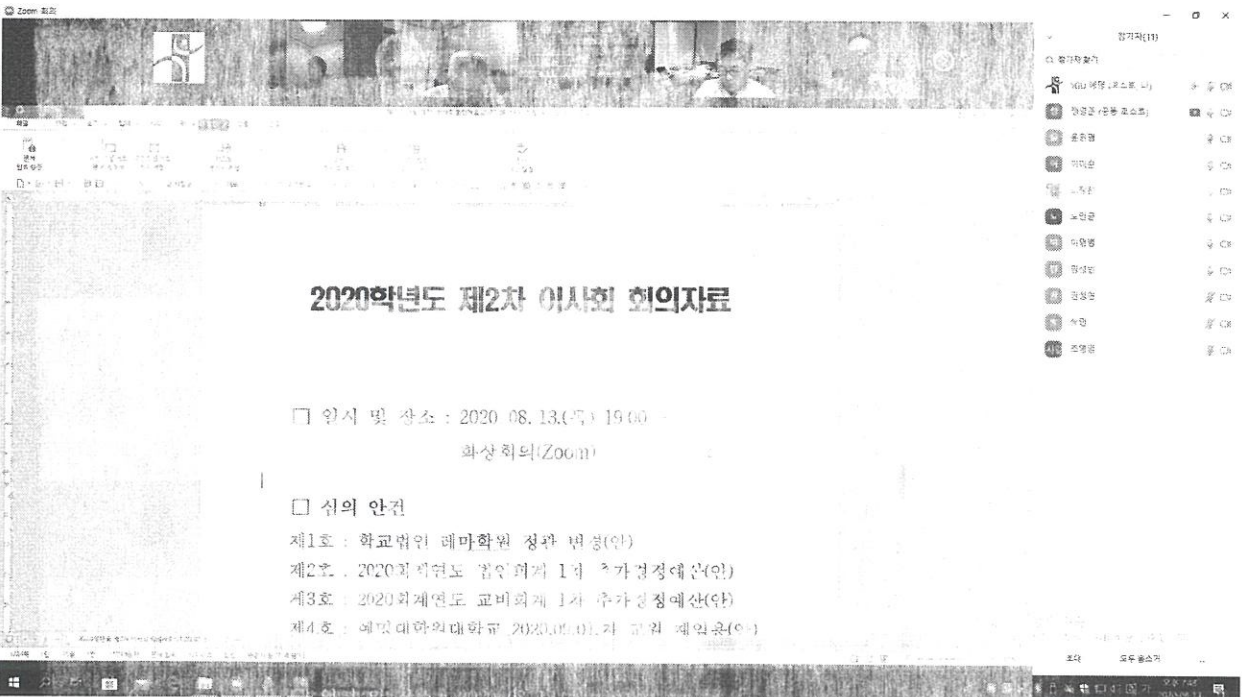
간서명	송민 	이미순 	조장환 
-----	--	--	---

현행	변경안	비고
<p>제42조(직위해제 및 해임)</p> <p>① (생략)</p> <p>② <u>임면권자</u>는 ...(중략)... 아니 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③ 제2항의 규정에 ...(중략)... <u>임면권자</u>는 ...(중략)... 한다.</p> <p>④ (생략)</p> <p>⑤ <u>임면권자</u>는 ...(중략)... 명한다.</p> <p>⑥ 제5항의 ...(중략)... <u>임면권자</u>는 ...(중략)... 하여야 한다.</p> <p>⑦ (생략)</p> <p>⑧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u>임면권자</u>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p>	<p>제42조(직위의 해제)</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임용권자</u>는 ...(중략)... 아니 할 수 있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 제2항의 규정에 ...(중략)... <u>임용권자</u>는 ...(중략)...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u>임용권자</u>는 ...(중략)... 명한다.</p> <p>⑥ 제5항의 ...(중략)... <u>임용권자</u>는 ...(중략)... 하여야 한다.</p> <p>⑦ (현행과 같음)</p> <p>⑧ <삭제></p>	<p>조문내용 및 사립학교법 조제목에 맞게 소제목을 변경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및 사립학교법에 맞게 면직의 사유 내용을 직위해제에서 삭제</p> <p><교육부시정요구></p>
<p>제46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p> <p>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u>임면</u>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중략)... 둔다.</p>	<p>제46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p> <p>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u>임용</u>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중략)... 둔다.</p>	<p>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p> <p><교육부시정요구></p>
<p>제47조(인사위원회의 기능)</p> <p>① (생략)</p> <p>1. 교원의 <u>임면</u>에 관한 사항</p> <p>2. ~ 5. (생략)</p> <p>② (생략)</p>	<p>제47조(인사위원회의 기능)</p> <p>① (현행과 같음)</p> <p>1. 교원의 <u>임용</u>에 관한 사항</p> <p>2.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p> <p><교육부시정요구></p>
<p>제54조의2(징계의 사유 및 종류)</p> <p>① 교원이 다음 ...(중략)... 교원의 <u>임면권자</u>는 ...(중략)... 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② ~ ⑤ (생략)</p>	<p>제54조의2(징계의 사유 및 종류)</p> <p>① 교원이 다음 ...(중략)... 교원의 <u>임용권자</u>는 ...(중략)... 하여야 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p> <p><교육부시정요구></p>

간서명	송민 	이미순 	조장환 
-----	--	---	---

현 행	변 경 안	비 고
제59조(징계의결 요구 사유 통지) 교원의 <u>임면권자</u> 가 교원에 대한 ... <u>(중략)</u> ... 송부하여야 한다.	제59조(징계의결 요구 사유 통지) 교원의 <u>임용권자</u> 가 교원에 대한 ... <u>(중략)</u> ... 송부하여야 한다.	사립 학교 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교육부 사정요구>
제61조(징계의결) ① (생략)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 <u>(중략)</u> ... <u>임명권자</u> 에게 보내어 알려야 한다. ③ <u>임면권자</u> 가 제2항의 징계의 결서를 ... <u>(중략)</u> ... 하여야 한다. ④ <u>임명권자</u> 는 ... <u>(중략)</u> ... 교부 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61조(징계의결)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 <u>(중략)</u> ... <u>임용권자</u> 에게 보내어 알려야 한다. ③ <u>임용권자</u> 가 제2항의 징계의 결서를 ... <u>(중략)</u> ... 하여야 한다. ④ <u>임용권자</u> 는 ... <u>(중략)</u> ... 교부 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사립 학교 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교육부 사정요구>
제61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교원의 <u>임용권자</u> 는 제54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 <u>(중략)</u> ... <u>관할청</u> 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1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u>임용권자</u> 는 교원이 제54조의2 제1항 각 호에 <u>해당하여 관할청으로부터</u> 징계를 요구 받은 사항에 대하여 ... <u>(중략)</u> ... <u>관할청</u> 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사립 학교 법 조문(제66조의2) 내용에 맞게 문구를 명확하게 함
제67조(임용) ①, ② (생략)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 하되, 학교 소속 일반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67조(임용)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 하되, 학교 소속 일반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사립 학교 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교육부 사정요구>
제75조의2(부설연구기관 등) 법인 또는 대학원대학교에 부설연구기관으로 평생교육원, <u>성서연구원</u> , 어학교육원 및 기타 기관을 둘 수 있다.	제75조의2(부설연구기관 등) 법인 또는 대학원대학교에 부설연구기관으로 평생교육원, <u>레마성서연구원</u> , 어학교육원 및 <u>예명상담센터</u> 를 둔다.	성서연구원을 레마성서연구원으로 하고, 기타 기관의 종류와 명칭을 명확히 명기함 <교육부 사정요구>

간서명	송민 	이미순 	조장환 
-----	--	--	---



간석명	송민	홍민	김미순	이미순	조강현	조장보
-----	----	----	-----	-----	-----	-----